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조오섭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249 발의연월일: 2021. 2. 23.

발 의 자:조오섭·문진석·조응천

허 영·진성준·김교흥

문정복 • 박영순 • 강준현

홍기원 • 진선미 • 김회재

박상혁 · 송갑석 · 윤영덕

주철현 · 천준호 · 장경태

의원(18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에 재생이 시급한 노후 주거지에 사업부지 확보가 가능하도록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의 혁신지구재생사업 방식을 규정하면서, 토지 등을 수용·사용할 수 있게 현행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(안 별표 제111호 신설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조오섭의원이 대표발의한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8248호)의 의결을 전제 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에 제1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11.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55조의2에 따라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 시행하는 혁신지구재생사업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